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196 |
|----------|-----|

2019.06.24.(월)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19년 5월 31일

다. 회부일자 : 2019년 6월 4일

라. 상정일자 : 2019년 6월 13일

(제3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경제통상국장 맹경재)

가. 제안이유

○ 불안정한 대·내외적 통상환경에 종합적·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출담당부서를 일원화하고자 단행된 도 조직개편('19. 1. 10일자)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사항임.

※ 조직개편 : 농식품유통과(농식품수출팀) ⇨ 국제통상과(농식품수출팀)

나. 주요내용

○ 제명을 조례의 내용에 맞게 변경(안 제명)

(현행)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⇒

(개정) 충청북도 농수산물식품 수출촉진 지원 조례

○ 위원장 및 부위원장 소관 범위 개정(안 제12조제2항)

- 충북 농수산물식품 수출진흥협의회 농수산물식품의 수출촉진 활성화 및 기능 강화를 위하여 단행된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장 및 부위원장 소관 범위를 개정하고자 함.

○ 당연직 위원의 범위 개정(안 제12조제3항)

- 충북 농수산물식품 수출진흥협의회 농수산물식품의 수출촉진 활성화 및 기능 강화를 위하여 단행된 조직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개정하고자 함.

3. 검토보고 요지(산업경제전문위원 : 오문석)

- ‘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은 지난 1월 도 조직개편에 따라 수출담당부서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이고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없 음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없 음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수 의견 요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”를 “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 촉진 지원 조례”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행정부지사”를 “농수산물 수출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”로 하고, “농정국장”을 “농수산물 수출 업무 담당국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장”을 “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장, 경제통상국 국제통상과장, 농정국 농식품유통과장 및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 발취

□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국민의 경제, 사회, 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,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,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, 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6. "농수산물"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
가. 농산물: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나. 수산물: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7. "식품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가.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

나.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

제6조(정책 수립·시행의 기본원칙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에는 시장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한 효율성을 추구하되,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세울 때에는 지역공동체의 유지, 해당 지역의 농업·농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.